

의 안 번 호	제 호	의 결 사 항
의 결 연 월 일	2020. . (제 회)	

저수지·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
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진영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0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저수지·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「저수지·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2항, 제22조의2제3항, 제22조의2제5항 및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합동안전점검 대상 시설물, 비상대처계획 수립 및 재검토 대상 종류와 규모, 비상대처계획에 포함할 사항을 정하는 한편, 비상대처계획 중앙심의 대상 및 시·도 심의 대상을 구분하고 비상대처계획 수립 및 재검토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안전점검 대상시설물에 재해위험저수지·댐으로 지정 및 관리 중인

저수지·댐 포함 규정 (안 제8조제1항제3호)

안전점검 대상 시설물에 재해위험저수지로 지정 및 관리중인 저수지·
댐도 점검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

나. 비상대처계획 수립 대상 및 재검토 대상 규정 신설(안 제22조의2)

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및 재검토 대상에 대한 종류 및 규모에 대한 세부
사항을 규정

다. 비상대처계획 수립 및 재검토 심의 등 규정 신설(안 제22조의3)

비상대처계획 중앙 및 시·도 위원회 심의 대상 구분 규정 필요

라.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또는 재검토 절차 규정 신설(안 제22조의4)

비상대처계획 수립 및 재검토 심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

마. 비상대처계획에 포함할 사항 규정 신설(안 제22조의5)

저수지·댐 관리자가 수립 및 재검토하는 비상대처계획에 포함할 사항을
규정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관계부처 등과 협의 예정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0. 9. 00. ~ 10. 00.) 예정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

저수지·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저수지·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본문 내용 중 제4조제1항제4호를 제4조제1항제6호로 한다.

제8조제1항 각호에 3호를 신설하고,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(합동안전점검)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할 대상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~ 2. (생략)

3. 법 제9조에 따라 재해위험저수지로 지정 및 관리중인 저수지·댐

② ~ ③ (생략)

제22조의2(비상대처계획 수립 및 재검토 대상) ① 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른 비상대처계획 수립 대상 저수지·댐의 종류 및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다른 법률에서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저수지·댐 중에 총 저수용량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저수지·댐
 2. 법 제9조에 따라 지정·고시된 재해위험저수지·댐
- ② 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른 비상대처계획 재검토 대상 저수지·댐의 종류 및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저수지·댐
 2. 저수용량 증가, 계획홍수량 증가, 하류 주거환경에 심대한 변화 등이 있는 저수지·댐. 이 경우 이미 수립된 비상대처계획을 즉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.

제22조의3(비상대처계획 수립 및 재검토 심의 등) ① 법 제22조의2제5항에 따른 비상대처계획 수립 및 재검토 대상 저수지·댐의 종류 및 규모 중에서 중앙위원회 심의대상은 총 저수용량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저수지·댐으로 하고, 나머지는 시·도위원회의 심의 대상으로 한다.

- ② 중앙 및 시·도 위원회의 심의는 소집회의 개최가 원칙이나,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.
- ③ 중앙 및 시·도위원회, 실무위원회는 비상대처계획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저수지·댐의 관리자 등 관계인의 출석이나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

제22조의4(비상대처계획의 수립·재검토 절차 등)① 법 제22조의2제6항 따라 비상대처계획을 수립 또는 재검토하여야 하는 저수지·댐관리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비상대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-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출받은 비상대처계획서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15일 이내에 저수지·댐관리자에게 서면으로(전자문

서를 포함한다) 통보하여야 한다.

- ③ 저수지·댐관리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검토의견을 반영한 후 비상대처계획서를 제22조의3제1항에 따라 중앙위원회 또는 시·도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.
- ④ 중앙 및 시·도위원회는 저수지·댐관리자로부터 심의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저수지·댐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⑤ 저수지·댐관리자는 중앙 및 시·도위원회 심의결과 보완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보완하여 제출하고, 재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재작성하여 재심의 요청하여야 한다.

제22조의5(비상대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) 법 제22조의2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에 따라 저수지·댐의 관리자가 수립 및 재검토 하는 비상대처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- 1. 댐과 저수지의 일반정보
- 2. 댐과 저수지의 하류부 하천 및 유역의 개요
- 3. 댐 및 저수지 붕괴 위험성 평가, 홍수류 해석
- 4. 홍수 범람 지도
- 5. 비상상황 시 정보 취득 및 보고방법
- 6. 관계 기관별 책임·임무, 비상발령 및 상황관리 체계
- 7. 주민대피계획 및 위험지역의 교통통제
- 8. 응급의료활동 및 생필품 공급
- 9. 비상대처계획의 실습 및 훈련
- 10. 주민대피로 및 구조활동로
- 11. 그 밖에 추가피해 방지 등 비상대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영은 2020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‘제30조제3항’ 및 ‘제31조제2항’을 삭제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중앙저수지·댐안전관리위원회 회의 심의사항) 「저수지·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 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4조 제1항제4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말한다.	제2조(중앙저수지·댐안전관리위원 회의 심의사항) ----- ----- ----- 제4조제1 항제6호 ----- ----- -----.
1. ~ 2. (생 략)	1. ~ 2. (현행과 같음)
제8조(합동안전점검) ① 법 제8조제 2항에 따라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할 <u>대상시설물</u> 은 다음 각 호와 같 다.	제8조(합동안전점검) ① ----- ----- -- 저수지·댐 ----- -.
1. 기초 지반부터 마루까지의 높이 가 15미터 이상인 저수지·댐	1. ~ 2. (현행과 같음)
2. 총저수용량이 50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저수지·댐	
<신 설>	3. 법 제9조에 따라 지정·고시된 재 해위험저수지·댐
② ~ ③ (생 략)	② ~ ③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제22조의2(비상대처계획 수립 및 재 검토 대상) ① 법 제22조의2제3항에

<신 설>

따른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해야 하는
저수지·댐의 종류 및 규모는 다음
각 호와 같다.

1. 다른 법률에서 비상대처계획의
수립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
고 있지 아니하는 저수지·댐 중에
총 저수용량 30만세제곱미터 이
상인 저수지·댐

2. 법 제9조에 따라 지정·고시된 재
해위험저수지·댐

② 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른 비상
대처계획을 재검토 하여야 하는
저수지·댐의 종류 및 규모는 다
음 각 호와 같다.

1.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저수
지·댐

2. 저수용량 증가, 계획홍수량 증
가, 하류 주거환경에 심대한 변화
등이 있는 저수지·댐. 이 경우 이
미 수립된 비상대처계획을 즉시
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.

제22조의3(비상대처계획 수립 및 재
검토 심의 등) ① 법 제22조의2제5
항에 따른 비상대처계획 수립 및 재
검토 하여야 하는 저수지·댐의 종류
및 규모 중에서 중앙위원회 심의 대

<신 설>

상은 총 저수용량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저수지·댐으로 하고, 나머지는 시·도위원회의 심의 대상으로 한다.

② 중앙 및 시·도 위원회의 심의는 소집회의 개최가 원칙이나,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.

③ 중앙 및 시·도위원회, 실무위원회는 비상대처계획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저수지·댐의 관리자 등 관계인의 출석이나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

제22조의4(비상대처계획의 수립·

재검토 절차 등)① 법 제22조의2 제6항 따라 비상대처계획을 수립 또는 재검토하여야 하는 저수지·댐관리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비상대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출 받은 비상대처계획서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15일 이내에 저수지·댐관리자에게 서면으로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 통보하여야

한다.

③ 저수지·댐관리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검토의견을 반영한 후 비상대처계획서를 제22조의3 제1항에 따라 중앙위원회 또는 시·도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.

④ 중앙 및 시·도위원회는 저수지·댐관리자로부터 심의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저수지·댐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⑤ 저수지·댐관리자는 중앙 및 시·도위원회 심의결과 보완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보완하여 제출하고, 재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재작성하여 재심의 요청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제22조의5(비상대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) 법 제22조의2제6항에 따라 저수지·댐의 관리자가 수립 및 재검토 하는 비상대처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댐과 저수지의 일반정보
2. 댐과 저수지의 하류부 하천 및
유역의 개요
3. 댐 및 저수지 붕괴 위험성 평가,
홍수류 해석
4. 홍수 범람 지도
5. 비상상황 시 정보 취득 및 보고
방법
6. 관계 기관별 책임·임무, 비상발
령 및 상황관리 체계
7. 주민대피계획 및 위험지역의 교
통통제
8. 응급의료활동 및 생필품 공급
9. 비상대처계획의 실습 및 훈련
10. 주민대피로 및 구조활동로
11. 그 밖에 추가피해 방지 등 비상
대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- 부 칙 -

제1조 (시행일) 이 영은 2020년 12
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자연재해
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
이 개정한다.

	‘제30조제3항’ 및 ‘제31조제2항’을 삭제한다.
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	
연 락 처	(044) 205 - 5152